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1998년 9월 23일 제출
- 나. 발 의 자 : 오광교 의원외 3인
- 다. 회부일자 : 1998년 9월 25일
- 라. 상정일자 : 제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98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오광교 의원)

가. 제안사유

-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5680호, '98.2.24)으로 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6조 제1항 중 “국내여비”를 “여비”로 하고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국외여비”를 “여비”로 한다.
- 제8조 제1항 중 “국내여비”를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로 하고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며 1야당 “19,500원”을 “22,0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한다.
- 제8조 제2항 중 “국외여비”를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로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장재영)

- 지방의원의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여행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관한 조례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이며, 동조례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그 동안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었음. 그러나 그 규율대

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법령으로 규율하는 한편,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비액 등을 달리 책정함으로써 법령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여행단가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되었음.

-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의 경우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인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개정된 바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적법타당한 것이며 그 내용 또한 단순한 자구수정 내지 여행단가의 조정에 불과한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